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8998 약정금(채무보증금)지급청구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조용현, 손태홍
피고, 항소인¹⁾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철호, 황정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가단22224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1)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303,74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8783 판결. 주문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03,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C이 2018.경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8. 5. 10.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C이 차용한 1억 3,800만 원 중 2018. 5. 10.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액 8,8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보증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5. 10. C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며, C의 채무가 소멸된 이상 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5. 10. 원고는 C으로부터 당일 50,000,000원을 변제받고 88,000,000원에 관하여는 C이 차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C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²⁾,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8. 12. 4. C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채권자로서 C에 대하여 8,8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사실³⁾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은 원고가 고소취하를 한 이후 2018. 12. 4.경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에도 원고가 C에 대하여 8,8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이 피고와 함께 원고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2) 고소취하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2018. 5. 10.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은 추후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피고소인에게 묻지 않을 것이오니 피고소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험칙상 고소취하서에 기재되는 문구는 피고소인의 선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 2018. 12. 4. C이 원고의 채권 8,800만 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취하서의 문구만을 근거로 피해금액 전액이 회수되었다거나 원고와 C 사이에 부채소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8,800만 원에 대한 채무보증서를 작성받고 C을 위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8783 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303,740,000원 상당이고, 수사과정에서 C은 채권액수가 1억 2,000만 원인데 원고가 이를 모두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C은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8,8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C이 2018. 12.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8,8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우인성
-----	----	-----

판사	최성배
----	-----

판사	유창훈
----	-----